

##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 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심사보고

### 1. 심사보고

가. 제안일자 : 2001. 12. 19

나. 제출자 : 김덕균 의원 외 18인

다. 회부일자 : 2001. 12.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12.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부천시의회 의원 김덕균)

가. 제안이유

○ 한국마사회가 원종1동에 위치해 있는 부천장외발매소를 교통의 혼잡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중심역세권인 심곡2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 결정으로서 마땅히 재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나. 주요골자

-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이전은 공공적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행심만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함
- 부천시가 건축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요구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사행심 조장, 인간성 파괴, 가정파괴 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가 조정되도록 해야 함
- 부천시는 중심역세권의 교통혼잡을 반영하고 열악한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를 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을 요구
- 부천시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조장하고 주차난을 가중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준높은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야 함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부천시에 마사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98년 이전까지는 마권세 비율에 따라 30~35억 정도입니다만, 지금은 도세로 되어 부천시 일정비율이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타시로 옮겨도 세수에 영향 없습니다.
○ 2001년도 세입은?	○ 도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정과 확인결과 금액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면 상대가 부천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텐데 방안은 있습니까?

- 5,000m' 이하로 접수되어 뚜렷한 사유없이 안해주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패소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원종동 소재 마권발매소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폐쇄를 요구하는데 결의안을 수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 소방분야 지적이 있었는데 건축심의 위원에 의원이 1명 있습니다. 교수, 공학박사 등 11명은 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번째 심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보류, 두세번째는 부결되어 부천시 용도변경 면적이 5,000m' 이하로 접수되어 건축심의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주 1명, 사회단체장, 신부님이 시장실에서 협의하였는데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 지장 없습니다. 부천시를 떠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수정에 응하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별 침

7. 소수의견요지

○ 발매소가 이전되면 주변에 예식장도 많고 역전 주변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  
원종동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52호
의결년월일	2001. 12. 24 (제92회)

제출년월일 : 2001. 12. 22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결의안 안전명에 부천장의발매소 이전반대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종동 발매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 심곡2동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허가 반려를 허가신청서 반려로 수정
- 3항에 원종동 발매소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 삽입

2. 주요골자

- 안전명 수정
  - 당초 :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
  - 변경 :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
- 결의문 수정
  - 당초 :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문
  - 변경 :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문
- “허가반려”를 “허가신청서반려”로 함(결의문 제3항)
- 원종동 발매소 폐쇄요구를 내용에 삽입(결의문 재3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  
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전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천시는 중심 역세권 교통흐름과 열악한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최악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의 심곡2동 부천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즉각 허가 신청서 반려를 요구한다. 아울러 개장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결의안 대비표

당 초	변 경
○ 안전명	○ 안전명



으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준 높은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건설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2001. 12. 24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